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가단2632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C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신수

변론 종결2024. 7. 12.

판결 선고2024. 10. 25.

주 문

1. 피고와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6.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11,053,8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53,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는 2012. 7. 9. E에게 23,000,000원을 '대출기간 : 36개월, 이율 : 연 21.9%, 연체이율 : 연 3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F 주식회사로부터 E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소349813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2. 12. 14. 'E는 원고에게 50,697,696원과 그중 13,376,188원에 대하여 2022.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3. 1. 4. 확정되었다. 다. 2023. 9. 22.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13,376,18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3,422,295원의 합계 56,798,483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E의 아버지 G은 2012. 11. 2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H와 자녀들인 E, I, 피고, J, K는 2019.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상속하고, E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7. 피고 앞으로 2012. 11.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27. '채무자 : 피고, 채권최고액 : 9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L중양회 앞으로 마쳐져 있었고, 2019. 6. 28. 기준 피고의 L중양회에 대한 채무는 67,000,000원이었다.

바. 피고는 2020. 9. 2. J에게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같은 해 9. 9.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9. 10. 16. 한국농어촌공사에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8,8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한 후 같은 해 10. 16.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E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다52917 판결 등 참조).

2)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E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2/13)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E는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13)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11,053,846원{=71,850,000원(=2020. 9.경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의 실거래가 80,000,000원+2019. 10.경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의 실거래가 58,850,000원-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67,000,000원)×E의 상속분 2/13}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53,8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관형

별지